

#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80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10월 30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던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의 재정비촉진지구로 모두 의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해당사항 없음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 관련)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 등) : 해당사항 없음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해당사항 없음
- (5) 갈등조정담당관 (공공갈등진단) : 해당사항 없음
- (6) 여성가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15. 7. 30.~ 8.19.) 결과 : 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 자료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      호

## **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### 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폐지로 비용발생 없음.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조례 전문 폐지로 해당없음

#### 3. 미첨부 사유

조례 전문 폐지로 해당없음

#### 4. 작성자

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총괄팀장 차창훈(02-2133-7216)